



‘인쇄’ 클린사업장 만드세요

정부서 1천만원까지 무상지원

한국산업안전공단에서 무상으로 1천만원까지 자금을 지원하고 있는 ‘클린(CLEAN)사업장 조성’ 사업에 인쇄인들의 이용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산업안전공단 서울북부지도원이 최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지원을 받은 인쇄업체는 총 141개 업체이며, 이 중 68개 업체는 서울북부지도원에서 지원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쇄업종에서 중점 지원을 받은 품목은 적치대, 중량물 취급설비(이동대차, 테이블리프트, 전동 포크리프트 등), 피로예방매트, 유기용제 국소배기장치, 높낮이조절 작업대 및 의자 등이었다.

구체적으로 안전설비(위험제거설비) 부문에서는 작업장 바닥, 출입문 및 통로 안전조치, 동력전달부 방호조치, 기계기구접지 등이었으며, 작업환경개선설비 부문에서는 관리대상물질(유기용제) 국소배기장치 등이었다. 그리고 작업공정개선설비 부문에서는 중량물취급설비(위커형 전동지게차 등), 내충격 바닥재 등이 주류를 이루었다.

2천만원 소요되면 5백만원만 부담

클린사업장 조성사업은 50인 미만 중소기업의 각종 유해위험요인제거 및 작업환경을 개선해 쾌적하고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으로 지원 대상자는 근로자 수 50인 미만의 제조업 사업장으로서 산재보험 가입 사업장이다.

지원한도는 소요비용의 100%(1천만원 한도)이며, 추가 소요비용의 경우 50%(1천만원 한도)를 지원하기 때문에 한 사업장 당 총 2천만원 한도 내에서 무상 지원된다.

결국 2천만의 비용이 필요하다면 공단 측에서 1천5백만원이 무상 지원되며, 사

업장에서 5백만원만 부담하면 된다.

그리고 지원을 받은 업체는 1년 이내에 시설확인을 받아야 하고, 전매는 금지되며 이전계획이 있는 업체는 통보만 해주면 그 외의 확인이나 다른 복잡한 업무는 없다. 또한 이미 지원을 받은 업체는 재차 지원이 불가능하나 저리(4% 이내)로 장기(3년 거치 7년 분할상환) 융자는 가능하다.

대상은 크게 안전상의 조치, 작업환경개선, 작업공정개선(50인 이상인 업체는 50% 지원, 3천만원 한도) 등 3부문으로 나뉘지며, 대상품목은 <표2>와 같다.

<표1> 인쇄업종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현황

단위 : 개소

구분	계(2년 누계)	2002년도	2003년도	비고
전체	전국	5,954	3,366	2,588
	서울 북부	350	159	191
인쇄업 (인쇄/경인쇄/제본)	전국	184	43	141
	서울 북부	70	2	68

자료 : 서울북부지도원

<표2> 클린사업장 대상품목

구분	대상 품목
안전상의 조치	작업자 및 위험기계기구 안전조치, 화재폭발 및 감전예방조치, 추락방지조치 등
작업환경개선	작업장 조도 확보, 소음방지조치, 분진 및 유해물질 관리, 온도습도 조절 개선, 밀폐공간 재해 예방조치 등
작업공정개선	중량물운반개선, 유해위험공정 자동화, 인간공학적 작업개선 등

〈표3〉 클린사업장 인정 기준

■ 안전상의 조치(CLEAN Danger)

평가 항목	적용 범위	인정 기준
1.1 작업장 안전의 적정성	△작업장의 바닥, 작업발판, 출입문, 비상구	· 작업장 바닥이 안전하고 청결하며, 작업발판, 출입문, 비상구 등의 설치상태가 적정할 것
1.2 통로의 안전조치 적정성	△통로, 계단 등	· 안전통로가 확보되어 있고, 구획 및 난간대 설치 등의 관리상태가 적정할 것
1.3 위험기계·기구 방호조치 및 기능의 적정성	△프레스·전단기, 가스용접기(산소·아세틸렌, CO2), 방폭구조 전기기계기구, 교류아크 용접기, 크레인, 승강기, 곤도라, 리프트, 공기압축기, 로울러기, 연삭기, 목재가공용 동근톱기계 및 동력식수동대패, 산업용로봇, 절연방호구 및 활선작업용 기구, 단조기, 버프연마기, 용해로, 주형조형기, 다이캐스팅기, 믹서기, 소성로, 도장부스, 포장기, 보일러, 폐지압축기, 사출성형기, 벽돌·블럭성형기, 혼합기, 스크류콘베이어, 시멘트 벨트콘베이어, 압연기·압출기, 드릴링머신, 선반, 지게차, 이동식작업대·사다리, 신선기, 파쇄·분쇄기, 코팅기, 정련기, 용접작업공정, 고소작업대(탑승식 차량제외), 프레스 금형교환장치, 사출성형기 금형교환장치, 사출성형기 자동취출설비, 원심탈수기 안전장치, 식품분쇄기 안전장치	· 해당 기계·기구의 방호장치 설치 및 기능이 유효한 상태일 것
1.4 동력 전달부분의 위험방지 적정성	△원동기, 회전축, 치차, 플리, 플라이휠 및 벨트 등의 덮개, 키·핀의 고정구의 문합형 또는 덮개	· 해당 동력전달부에 덮개, 울, 슬리브 및 건널다리 설치 등 위험방지 조치가 적정한 상태일 것
1.5 차량계 하역운반기계의 안전 조치 적정성	△수리·점검시 안전지주, 공전대 제한속도 표시 및 표지판	· 안전지주의 비치, 제한속도표지의 설치가 적절한 상태일 것
1.6 폭발·인화성 물질 등의 관리	△보관실 및 용기 · 자동경보장비, 통풍·환기 및 제진조치, 가스용기의 전도방지장치, 소화설비 비치, 안전밸브·파열판 및 통기설비 설치, 화염방지기 설치, 건축물의 내화구조 △폭발성 물질의 가스검지 및 경보장치(휴대용 제외) △인화성 물질의 가스검지 및 경보장치(휴대용 제외)	· 폭발·인화성 물질 등 위험물질에 대한 안전조치, 관리상태 및 폭발성, 인화성 물질의 가스검지 및 경보장치 설치 상태가 적정할 것
1.7 감전방지 조치의 적정성	△전기설비 · 충전부 방호조치, 전동기계·기구의 접지, 누전차단기, 방폭구조 전기기계기구, 이동식 코드릴(누전차단기 부착)	· 충전부 방호, 접지, 누전차단기 설치 등 감전재해 예방 조치가 적정한 상태일 것
1.8 개구부 등 추락위험 장소의 추락 방지 조치 적정성	△추락방지 설비 · 안전방책, 안전난간대, 개구부 덮개	· 추락위험장소에 대한 추락방지시설 설치가 적절한 상태일 것

■ 작업환경개선(CLEAN Dirtiness)

평가 항목	적용 범위	인정 기준
2.1 작업장내의 규정 조도 확보	△작업장의 조명시설 : 국소조명 및 전체조명시설 △채광시설 : 자연채광용 설비(선루프)	· 작업장내의 조도가 다음기준을 만족할 것 - 초정밀 작업 : 750럭스 이상, 정밀작업 : 300럭스 이상 - 보통작업 : 150럭스 이상, 기타작업 : 75럭스 이상
2.2 소음에 의한 건강장해 예방조치 적정성	△발생억제 및 전파방지 설비 · 흡음시설 및 방음시설, 설비의 대체, 격리 및 밀폐설비 △관리대책 · 차음보호구 착용상태 및 착용지시표지판 설치	· 작업장내의 소음유지상태가 다음 기준을 만족하거나, 차음 보호구 지급 및 착용관리 상태 등이 양호할 것 - 1일노출시간 8hr: 90dB(A)미만, 4hr: 95dB(A)미만, 2hr: 100dB(A)미만, 1hr: 105dB(A)미만, ½hr: 110dB(A)미만, ¼hr: 115dB(A)미만
2.3 분진에 의한 건강장해 예방조치 적정성	△분진작업장의 분진관리 설비 · 국소배기장치, 전체환기장치, 밀폐설비, 습윤상태 유지설비	· 분진작업장의 관리상태가 적정할 것
2.4 관리대상 유해물질에 의한 건강장해 예방조치 적정성	△관리대상 유해물질 관리설비 · 국소배기장치, 전체환기장치, 밀폐설비, 불침투성 바닥재	· 관리대상 유해물질 취급작업장의 관리상태가 적정할 것
2.5 허가대상 유해물질에 의한 건강장해 예방조치 적정성	△허가대상 유해물질 관리설비 · 국소배기장치, 밀폐설비, 불침투성 바닥재	· 허가대상 유해물질 취급작업장의 관리상태가 적정할 것
2.6 온·습도에 의한 건강장해 예방조치 적정성	△고열, 한랭, 다습장해 예방설비 · 온·습도 조절장치	· 고열, 한랭, 다습작업장의 관리상태가 적정할 것
2.7 밀폐공간작업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조치 적정성	△밀폐공간작업자의 건강장해 예방설비 · 고정식 급·배기용 환기시설	· 밀폐공간작업에 대한 관리상태가 적정할 것
2.8 세척·세안시설 등의 설치적정성	△분진작업장, 고열·다습작업장, 관리대상, 허가대상 유해물질 취급작업장의 세척시설 및 세안시설	· 분진작업장, 고열·다습작업장, 관리대상, 허가대상 유해물질 취급작업장의 세척시설 및 세안시설 설치, 관리상태가 적정할 것

■ 작업공정개선(CLEAN Difficulty)

평가 항목	적용 범위	인정 기준
3.1 근골격계질환 예방을 위한 설비의 적정성	△이동식 대차 및 컨베이어, 중량물 운반설비(탑승식 차량 제외), 중량물 운반용 보조기구(에어발란스, 진공빨판 등), 삼유원단적재설비, 자동조형 및 탈사설비, 용탕주입 자동화설비, 할피기 자동취출설비, 도금자동화설비, 요통 및 근골격계질환자 발생공정의 자동화 설비	· 근골격계 부담 작업공정에 대한 근골격계질환 예방 조치가 적정할 것
3.2 근골격계질환 예방을 위한 작업조건 적정성	△높이 또는 각도조절가능 작업대 및 의자, 탄력성 및 내충격성 재질의 작업장 바닥재, 무거운 공구의 지지대 및 걸이	· 인간공학적요로 설계된 편의설비 사용 등 근골격계질환 예방 조치가 적정할 것

문의 : 보건분야(3783-8344), 안전분야(3783-8326)